

(앞쪽)

제 호											
유어장지정서											
유어장의 지정 을 받은 자	소속 () 어촌계, 영어조합법인, 지구별 수협 주사무소 주소						대표자 성명				
유어장의 지정 사항	명 칭	() 유어장					지정번호		제 호		
	위 치	인접									
	면 적	ha		평균수심		m		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		m	
	지정기간	년 월		일부터		년 월		일까지			
수산동식물 포 획·채취방법											
유어장의 시설상황	간이화장실		오물처리장		입간판		표지시설		기타편의시설		
	개소		개소		개		개		개		
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상황	관리선			안전장비							
	업종	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		규모	구멍 동의	구멍 부환	구멍줄	통신 기기	소화기	구급 약품	기타
				톤							
				톤							
				톤							
				톤							
				톤							
가두리를 이용 한 낚시터 등의 시설 현황	구분	[]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 []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 [] 수상낚시터									
	시설면적				m ²	최대 동시이용 가능인원		명			
	시설·장비 명세										
제한 또는 조건											
유어장의 관리규정 (별도 첨부)											
「수산업법」 제65조제1항 또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55조제1항 및 「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. 년 월 일 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											

지정사항 변경내용(「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6조 관련)		
변 경 사 항	변 경 내 용	변 경 일 자
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		
관리선의 선명		
관 리 선		
가두리를 이용한 낙시터, 축제식을 이용한 낙시터 또는 수상낙시터		
유어장관리규정		